

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은 2005년 8월 3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2005. 5.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(조례 제 626호) · 공포되어 2005. 7.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, 또한 2005. 1.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II. 주요골자

- 가.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”로 정비함.
- 나.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기금운용관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기금출납원 “치수관리담당주사”를 “재난관리담당주사”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변경함 (안 제6조).
- 다. 2005. 7.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간사 “치수관리담당주사”를 “재난관리담당주사”로 변경함 (안 제8조).

III. 검토의견

1. 조례제명 띄어쓰기의 배경

법령제명의 붙여 쓰기는 법제처의 “법령입안심사기준” 및 국회의 “국회법률입안기준”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,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,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

있어 법제처에서는 예규인 “법령입안심사기준”을 개정하여 2005. 1. 1일 이후 제 · 개정되는 것부터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준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함에 따라 앞으로 제 ·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문화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한 부분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.

2. 조례개정 내용

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2005. 3. 11일 제정 (조례 제 615호)된바 있고, 또한 2005. 5.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(조례 제626호)가 일부개정되어 2005. 7.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, 인용되는 법령명칭,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, 간사 등 명칭을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개정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. 기타 다른 개정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.

IV. 관계법규

● 문화예술진흥법

제8조(어문규범의 준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●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(2005.5.27 조례 제626호)

●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(2004.1.30 규칙 제446호)